

토론회브리핑



토론회브리핑 | 2024년 11월 1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이한주 | idp.theminjoo.kr

「경제위기 방관하고,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」 요약

- 일시 및 장소 : 2024년 10월 30일 오전 10시,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
- 주최 : 민주연구원, 정태호·허영 국회의원, 포용재정포럼, 참여연대, 경실련, 포럼사의재

1. 발제1 정부예산안 총론평가 <강병구 인하대 교수>

-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의 목표를 ‘서민중산층 시대의 구현’. 특히, 약자복지 강조
 - 예산편성 기본방향 : 민생과제 집중투자,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,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
- 정부는 2025년 예산안 긴축예산으로 편성, **약자복지도 취약**
 - 2024년 본예산 대비 실질증가율(물가상승률 2.1% 고려) -1.3%
 - 약자복지 예산 4.3조원(전년 대비)은 경제활력 제고 예산 7.7조원보다 작은 수준
 - 역진적인 세법개정안 : 상속 및 증여세 -18.6조원, 소득세와 법인세 -2.5조원, 부가세 -1.7조원
-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, **민간주도 성장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**
 - 조세부담률 하락, 세제의 재분배기능 약화,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의 확장성 감소
 - 2023년 경제성장률 1.4%(최초 전망치 2.5%)로, 경제위기 제외하면 가장 최악의 성장률
 - 2024년 4월 IMF의 2024~202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2년 전보다 0.17% 낮게 전망
 - 2023년 폐업신고 사업자수 100만 명에 육박, 양극화 확대로 민생경제는 더욱 힘들어짐
- **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재정 운영 전략 필요**
 - 낙수효과와 건전재정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
 - 누진적 보편과세 방식으로 필요한 자원 확보,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강화
 - 약자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재정지원 확대

- 재정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책임 강화
 - 국회의 예산 결정 권한 강화, 예산편성의 투명성 향상
 - 지역균형발전 견인하는 재정 분권 추진

2. 발제2 정부예산안 세부평가 <정창수 나람살림연구소장>

○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**긴축예산**

- 2025년 예산의 재량지출 지출 증대는 0.8%에 불과
 - 재량지출 0.8% 증대의 대부분은 물가상승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법적의무지출
 - 16대 분야 중, 2024년 보다 5% 초과 순증한 분야는 과학기술(17.3%)와 예비비(14.3%)
- 2025년 국가 운용 계획은 2024년 삭감된 R&D 총액 원상복귀하고, 국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지출 증대임을 알 수 있음

○ 프로그램 기준으로 국회의 꼼꼼한 심사 필요

-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목표, 성과평가 등을 파악할 수 있음
 - 2025년 정부 지출액은 24년 대비 20.8조원이 순증됐으나, 이종의 약 60%는 정책목표와 상관없는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결과적 증액
 - * 국민연금운영 5조원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.4조원, 공무원연금급여 2조원, 노인생활안정 1.8조원
- 프로그램예산 증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

○ 2025년 예산안 세출 프로그램별 세부 평가

- 사회복지예산은 많은 부분 순증하였지만, 임대주택지원(출자)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1.5% 감소 (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예산 감소)
 - 임대주택지원 관련 예산은 4년 간 큰 폭으로 줄었음
 - * 임대주택지원(유자) 20.3% 감소, 임대주택지원(출자) 57.1% 감소
- 과학기술 분야 및 R&D 예산에서는 2025년도부터 우주항공진흥이 추가, 원자력 분야는 63.3% 증가
- 지역경제활성화와 탄소중립관련 예산은 각각 56.7%, 37.6% 감소
-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분에서는 지방채 인수(유자) 관련 부문이 2024년 대비 99.8%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

○ **적극적 재정역할** 필요

- 재정건전성 통계 지표 관리만을 위한 재정준칙 고수 지양
- 국가의 재정역할을 확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
- 재량지출 0.8% 증대만으로는 재정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없음

3. 토론1 <조영철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>

○ 세수결손 30조원 : 자의적 조정(마사지) 가능성 높음

- 30조원 초과 시 대책마련이 복잡해 짐. 30조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했으나 향후 30조원을 초과할 가능성 매우 높음
- 내년 세입예산도 달성 어려움. 결국, 2.9% 재정건전성을 위해 모든 숫자가 임의적으로 조정
- 매년 20조원 세출 구조조정했다는데, 내역을 알 수 없음 : 검증불가 영역

○ 악순환의 고리 : 감세정책 → 세수결손 → 긴축재정 → 성장률 둔화 → 세수결손

- 2025년 예산 재정충격 지수 -0.7 (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)로, 전년 대비 긴축재정
-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, 기획재정부는 긴축재정으로 경기 후퇴
- 고용도 14.4만명 증가로 나타나지만, 고령층 여자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

○ 장기전망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이유

- 재량지출 1.1%는 정책의지 실종 의무. 중장기 전망에도 이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비현실적. 중기전망의 숫자 모두 왜곡
-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, 복지지출 급증으로 인해 의무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데, 재량지출만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킴

4. 토론2 <류덕현 중앙대 교수>

○ 지출예산 자율성 부족

- 의무지출이 많은 보건·복지·노동만 단기, 중기 모두 높은 증가율
- 경제예산인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, SOC 예산은 예산안 증가율(3.2%) 수준을 하회

○ 재정건전성 집착 : 올해 성장률 2.6% 달성 불가, 개인적으로 2.2% 성장률 예상

- 4분기 성장률 2.1% 증가 시 정부 목표치 달성 가능. 한국은행 예상: 4Q 1.3%, 전년 2.4%
- 개인적으로 0.5% 성장으로, 2024년 성장률 2.2% 시현 예상. 예산의 적극적 역할 필요

○ 세수결손과 정부대응 : 매우 문제

-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에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
: 건전재정 원칙 고수, 여소야대 부담, 정부 예산편성권 유지 등
- 안도걸 의원안 시행 필요 : 세수 결손 시 추경 의무화, 6·8·11월 세수 재추계 보고 등

5. 토론3 <최혜지 서울여대 교수>

○ 보건복지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증가폭은 작음

- 보건복지 예산은 125조원으로 가장 크고 증가율이 7.4%로 가장 높았음
- 기초생활보장(18.6조원, 4.1% 증가)와 공적연금(49.3조원, 11.3% 증가) 등 의무사업 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
- 실제 정부의지에 의한 예산증가는 소극적

○ 사회적안전망 예산 부족

- 기초생보 12.6% 증가. 중요 변수인 기준중위소득 인상의 영향이 큼
- 의료급여 2.8% 감소.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어 개인부담 크게 증가
- 기초연금 8.2% 증가. 노인인구증가(35만명), 기준연금 상승 등에 따라 자연증가

○ 인적자원투자 예산 감소

- 보육예산 2.4% 감소. 아동수 감소에 의한 자연감소와 어린이집 확충예산 감소 등의 결과
- 아동돌봄 3.7% 감소. 아동수 감소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20.1% 감소

6. 토론4 <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>

○ 세입예산안 : 3년연속 세입결손 전망

- 윤석열 정부는 '3년 연속 세입결손'과 '재정준칙 3.0%' 중 후자를 선택
- 세입결손 30조원 포함하면 국세수입(증가율 13.2%), 관리재정수지(-2.9%) 모두 달성 어려움
-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: 정부안 대비 -5조원
- 정부 상속증여세법만 부결시켜도, 2025년 세입예산 2.4조원 증가

○ 세출예산안 : 정부 역할 포기 선언

- 저출산 예산 : 현행 51조원에서 1.7조원 추가. 정책효과 의문
- 대중교통 예산 : K-패스, 기후동행카드 등 시행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 1% 증가에 그침
- 의정갈등 예산 : 정책실패에 따라 6천억원 이상 예산 소요
- 윤석열 민생간담회 예산 패스 : 241개 정책 1,274조원의 예산 미편성
- 임대주택 예산 패스 : 올해 세수결손에도 주택도시기금 2~3조원 사용
다가구 매입임대 -2.7조원 등 주요 임대주택 예산 삭감

○ 정부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필요

- 해당 국회법으로 인해 11월 30일 이전 미합의된 예결위 및 기재위 논의사항이 무의미
- 향후 대통령의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침해 행위